

【문39】 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따라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.
- ② 고용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.
- ③ 전세권이 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법정갱신되는 경우는 건물 전세권에 한한다.
- ④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
- 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거나 건물의 매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.

【문40】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는데,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.
- ②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,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는데,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.
- ③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.
- ⑤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.

【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10문】

【문41】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·예규 및 선례에 의함. 이하 [문41~문50]까지 같음)

- ① 신고의 추후보완에 관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 규정은 보고적 신고에만 적용되고, 창설적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②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후 추후보완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추후보완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신고서 기재의 흠결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, 당해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.
- ③ 부(父)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(父)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,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(父)를 기록하여야 한다.
- ④ 이름(名)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,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⑤ 혼인 외의 자에 대한 부(父)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인 부(父)가 추후보완신고인의 적격자라고 할 수 있으나, 이 신고는 동시에 보고적 신고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(母)가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.

【문42】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②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태한 책임은 모에게 있다.
- ③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거주지 방식으로 그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관한 보고적 신고를 한 경우 거주지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한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적 신고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볼 수 있으므로,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적 신고를 기간 내에 하였다면 따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.
- ④ 출생신고의 기간 경과 후에 과태료를 면할 목적으로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사실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⑤ 시(구)·읍·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【문43】 출생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민법」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(父)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.
- ② 법률상 남편이 행방불명인 상태, 장기간 해외체류, 사실상이혼으로 별거 상태, 교도소 수감 등 부부의 동거가 없어 법률상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상태에서 타남과 사이에 자를 임신하여 출산한 때에는 친생자 추정 미치지 않고 부자관계의 다름도 ‘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’에 의해서 가능하다.
- ③ 병원, 교도소,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④ 부부가 별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므로, 부부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관계에서 자가 태어난 경우에도 그 자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된다.
- ⑤ 기아(棄兒)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48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(市)·읍·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【문44】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관할법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적취득자의 성·본 창설허가신청은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·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
- ②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(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)를 관할하는 가정법원
- ③ 가족관계등록장철허가신청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
- ④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
- 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(지원)이나 시·군법원, 다만,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

【문45】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,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.
- ②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 및 신고서나 수리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·읍·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.
-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(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)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,000원으로 하고,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.
-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.

【문46】 혼인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적령에 달하여 혼인할 수 있으며, 혼인적령에 달하지 못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. 혼인적령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.
- ② 양자가 미성년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혼인신고인이 생존하던 중에 혼인신고서를 우송하였으나 그 혼인신고인 일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서가 도착하였다면 시(市)·읍·면의 장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.
- ④ 혼인 연령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자신이 직접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.
- ⑤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수리한 시(市)·읍·면의 장은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.

【문47】 사망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수해,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(市)·읍·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개별적으로 이미 사망의 신고를 한 때에는 인정사망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, 설령 인정사망통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인정사망의 기록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것이 아니다.
- ③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④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,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·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.
- 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,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,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.

【문48】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이혼당사자인 부(夫) 또는 처(妻)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.
-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.
-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법원은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(지원)이나 시·군법원이다. 다만,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.
- ④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.
- ⑤ 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.

【문49】 친권자 지정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
- ②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
- ③ 미성년자를 인정한 때
- ④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(父)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
- 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모(母)가 출생신고를 한 때

【문50】 개명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후에,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,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.
- ②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, 다만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.
- ③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개명허가 신청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.
- ④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,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.
- ⑤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.